

소방법 체계개편(下)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대한 고찰

이윤근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1. 머리말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복합화 등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방법을 분야별·기능에 따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법하여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내용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소방법과는 좀더 현실성에 가깝게 제정되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정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체점검의 구분과 자체점검의 방법

가. 자체점검의 구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차이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점검의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의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자

체점검표의 점검항목을 소방시설관리사 책임 하에 점검하여야 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3. 달라진 자체점검 제도

종전의 소방법령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표 2>와 같이 상반기에는 작동기능점검을 하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에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종합정밀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 이유는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 같은 날에 수십 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하는 등 종합정밀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시기를 분산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표 2> 종전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주요내용

구 분	점검구분 및 점검자
1. 점검대상에 따른 점검자의 자격	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0㎡ 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 제외)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자에 한한다)
2. 점검횟수	(2)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가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 다. 가항·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2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함.
	가. 작동기능점검 : 상반기 1회 실시
	나. 종합정밀점검 : 하반기 1회 실시

〈표 3〉 개정된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주요내용

점검대상	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자격자 및 점검횟수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은 제외)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가. 작동기능점검 (1) 점검자격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2) 점검횟수 :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함 나. 종합정밀점검 (1) 점검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2)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 1일부터 6월말인 경우 : 1월 1일부터 6월말 사이의 기간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말 사이의 기간에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모두를 실시하여야 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7월 1일부터 12월말인 경우 : 7월 1일부터 12월말 사이의 기간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2. 위 제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가. 작동기능점검만을 실시함. (1) 점검자격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2)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상반기에 실시함.

4. 종전과 달라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제도의 주요내용

〈표 2〉와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에 변화가 있으며, 이외에도 〈표 4〉와 같이 변화되었다.

5. 공공기관의 소방점검

가. 정밀소방점검 실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관련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 법률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방화관리규정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연 1회 이상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밀소방점검의 양식 및 보고

소방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밀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9월중 고시에정) 제 2조 규정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의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제도의 변경

구분	종 전	현 행
점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기능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 이상(아파트 제외) □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 이상 (아파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기능점검 :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한 모든특정소방대상물 □ 종합정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위험물제조소제외)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점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기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 종합정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기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방화관리자 ③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③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기능점검 : 상반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 하반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기능점검 : 상반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 1일부터 6월 31일인 경우 : 1월 1일부터 6월 31일 사이에 실시 ②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시

정밀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며,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정밀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 1회 이상 소방점검 실시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외관점검표에 의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시행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의 시행일은 2004년 5월 30일부터이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월 1회 이상의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6. 자체점검관련 벌칙사항

가.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호]

〈 표 5〉 특정소방대상물별 점검구분

구분	점검의 구분	시기 및 횟수
특정 소방 대상물	○ 스프링클러·물분무 등 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 이상(④ 제외)	작동기능점검 상반기 1회 이상
	○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② ①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상반기 1회 이상	
③ 공공기관	소방점검 월 1회 이상	
④ 위험물제조소 등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제1항제10호)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관계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제1항1호)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소방방재청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참조〉

-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3)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5)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자체점검 결과 지적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별 점검구분

〈표 5〉와 같다.

8. 맺음말

이번 소방법령체계 개편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특히 자율방화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자체점검대상을 대폭 강화하여 자기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은 건축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평소에 기능과 작동 면에서 100%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기 위해서는 규정을 떠나서 내 건물에 대한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평소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할 것이다. ☎